제100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(강화)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대상 확대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외부망을 통해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대상 확대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대상 확대 ▶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, 제6조, 제8조	비중요
2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원격대학 등의 언어재활 관련 현장실습과목 기준 (신설) ㅇ (과목) 언어재활관찰, 언어진단실습, 언어재활실습 등 3개 과목 ㅇ (운영기준) 지도교수 자격, 실습 인원 비율, 실습실 환경 등 규정 ▶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, 별표 6의3	중요
		2. 원격대학 등의 졸업생의 언어재활 관련 현장실습과목 기준 (신설) ㅇ (대상)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경과조치 대상자(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4조에 근거) ㅇ (과목) 2개 과목(언어진단실습, 언어재활실습) ㅇ (이수시간) 총 30시간 이상 추가 이수 ▶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	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기준(신설) ㅇ 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설,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함 ▶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3, 별표 1의3	비중요
4	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대상이 되는 수리행위 및 신청 적합성에 대한 현장심사(신설) ㅇ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 신청 대상, 제출 서류, 심사 방식 등 등록제 절차 ▶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, 제9조	비중요
		2.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 ㅇ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취소, 영업 정지 행정처분 기준 ▶어선법 시행규칙 제10조, 별표 1의2	비중요
5	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항목(강화) ㅇ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31조(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)제1항에 부가통신사업 변경 등록 대상 항목 추가 ▶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	비중요
		2.부가통신사업자 제재처분 기준(신설) ㅇ 등록 조건 미준수 시 사업정지, 등록취소 처분 신설 ㅇ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신설 ㅇ 정보통신망법 상 시정명령(스팸 역무제공 중단 등) 미이행 시 사업정지, 등록취소 처분기준 신설 ▶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(강화) ㅇ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강화 ㅇ 자본금 요건 강화 ㅇ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▶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	중요